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채이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62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5. 24.

발의자 : 채이배 · 김종대 · 이동섭

맹성국 · 이상현 · 박선숙

김삼화 · 금태섭 · 김종민

이용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상법 제22조의2에 따르면 ‘상호의 가등기’는 ‘주식회사’와 ‘유한회사’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‘유한책임회사’는 동 조항에 따라 상호의 가등기가 불가함.

유한책임회사는 운영과 기관 구성의 측면에서 사적 자치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일 뿐 설립등기 전 출자를 이행하여야 하는 등 설립 절차에 있어서는 유한회사와 유사함.

이에 상호의 가등기를 유한책임회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상법 제22조의2를 개정하여 설립절차 진행 중 타인이 먼저 그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(안 제22조의2제1항).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제1항 중 “株式會社”를 “유한책임회사, 주식회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第22條의2(商號의 假登記) ① <u>株式會社</u> 또는 有限公司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本店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登記所에 商號의 假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第22條의2(商號의 假登記) ① <u>유한책임회사, 주식회사</u>----- ----- ----- -----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